

‘26. 7.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정 과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51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의 일부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규정을 조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4조)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정비(안 별표 2)
 -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항목 순위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부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아. 입법예고 기간 : 2026. 5. 22. ~ 6. 11.(20일간)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아.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췌
 - 개선권고 관련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정비 대상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발췌서(전주시, 정읍시)
- 자. 현행 조례
- 차. 방침결정문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별표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약정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대학교 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u>평가대상 금융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u> ④ ~ ⑧ (생략) <u><신 설></u>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단서 삭제></u> ④ ~ ⑧ (현행과 같음) <u>제4조의2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u> ① 위원회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평가에서 제척된다.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u>

[별표 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일반원칙

1. (생략)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
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
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별표 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
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
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
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한다.

2.

.

5(시와 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20)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세정과-7617 (2026.5.26.)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 육 가 족 과 장 영

주무관	아마에	여성가족팀장	최남	교육가족과 과 전결	2026. 5. 26.
협조자				장	김숙영
시행	교육가족과-18483	(2026. 5. 26.)	접수	세정과-7673	(2026. 5. 27.)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1majvm6@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세정과-8469

제 목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

세정과-7614(2026. 5. 26.)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 의견조회기간 : 2026. 5. 26. ~ 6. 5.(11일간)
3. 의견조회결과 : 의견없음
4. 보고자 의견 : 부서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2026. 6. 9.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이영기

세외수입팀장

이용기

세정과장

최근열

협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세정과-8785

제 목 김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김제시 금조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6. 5. 26. ~ 6. 11.(21일간)
3. 공고방법 : 김제시보(공고 제2026-647호), 김제시 홈페이지
4. 의견수렴 : 의견없음
5. 보고자의견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2026. 6. 15.

주무관

이영기

세외수입팀장

이윤기

세정과장

최근열

협조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621(2026.6.26.)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25.(목) 09:2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9	행정지원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30	세 정 과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31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026-32	교육가족과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2026-33	스마트유통과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6	2026-34	기술보급과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35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8	2026-36	수도사업소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교육가족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범**

의회법무팀장 **이예라**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전결 2026. 6. 29.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8673

접수

무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양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kirus@korea.kr

/ 무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행 2025. 12. 10.]

[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 2025. 12. 10., 일부개정.]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5(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5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 (1순위 2.0점, 2순위 1.9점, 최저순위 1.2점)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채**

9.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 **평가대상 :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평가기준 :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문제점

-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평가 및 금고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안건 심의 등에서도 공정성·객관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 경남 사천시 등은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민간전문가 비율을 행안부 예규(과반수 이상) 보다 완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저하
 - 부산 기장군 등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위원 및 금융기관 대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게 규정하여 이해충돌 발생 시 통제 불가
- ② 행안부 예규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했으나
 - 경기 연천군 등은 협력사업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 전남 여수시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규정을 누락하여 불투명한 집행 우려 및 외부통제 곤란

□ 개선방안

①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경남 사천시 등은 민간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보완
- 부산 기장군 등은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 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미흡한 규정 보완**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금액 및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 경기 연천군 등은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 마련

* 협력사업비 총액,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

- 전남 여수시는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보완**

[타 기관 우수사례]

■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삭제<2017.5.22.>

2.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명

3.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7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 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 참고자료 : 개선권고 관련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정비 대상

[표 9] 금고 지정·운영 관련 규정 현황

구분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② 협력사업비 공개
	민간전문가 비율 (과반수 이상)	제척·기피·회피	
군산시		미흡	
익산시		미흡	
김제시		미흡	
남원시		미흡	
완주군		미흡	
진안군	미흡	규정없음	
무주군		미흡	
임실군		미흡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발췌서(전주시, 정읍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2023.07.13 조례 제4038호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13.]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2026.04.10 조례 제2338호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01.]

□ **현행 조례**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2025.08.08 조례 제1789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제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7.>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8.7.>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8.7>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을 말한다.<개정 2019.8.7.>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3.18.>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 908>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04.17 조례835>

제1조의3(적용범위) 이 조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제2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9>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3.04.17 조례835>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김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 908>

<개정 2015.11.19>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1.19>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07. 9. 19 조례557>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04.17 조례835>

6. <삭제 2014.11.17 조례90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5.11.19>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1)

<개정 2013.04.17 조례835><일부개정 2015.11.19>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8.7.>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8.7.>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9.8.7.>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평가한다.<일부개정 2015.11.19>

1.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8.7.>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5. (삭제 2010.10.11)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⑦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금고지정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8.7.>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제6조의2(협력사업비 처리방법)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1.19>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조례909>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 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9>

제7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 해지통지를 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 908><일부개정 2015.11.19>

③ <삭제 2014.11.17 조례908>

제8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

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조례90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 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07. 9. 19 조례55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0.11 조례제6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04.17 조례8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5.11.19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는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6.7.15 조례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는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8.7. 조례 12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는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까
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
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9호, 제정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기간 만
료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9.8.7. 일부개정 2025.8.8.>

김제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24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 적용금리	7 6 4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5 2	

[별표 2] <일부개정 2025.8.8.>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4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하여 배점

마.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 적용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및 만기 경과 후 적용

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지방세입금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등),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최근 3년이내 기간동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하여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동안 현금출연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 실적 배제)

□ 방침결정문

지동형선내에서만중까지 비상하는 김제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김제시정운영대행 부 시 장
문서번호	세정과-	이영기	이영세	최근국	유영세	이혜라
보존기간	년	협조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보고일자	2026. 5. .					
공개여부	비공개					

김제시 금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김 제 시
세 정 과